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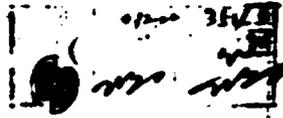
# 기 안 용 지

(전화: 731-6227)

시행성  
특별취급

분류기호 문서번호	영영 01250-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Eon	
시행일자	90. 12	제	
보조 기관	부시장	전경	협 조 기 관
	내무국장	W	
	영정국장	W	
기안책임자	무영단		발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내부길재		발 신 명 의
세 목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1.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시면에게 알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나. 제정 주요내용 및 취지 : 별첨.			
다. 의견제출 기한 : 1991년 1월 20일			
첨부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1부. : 끝.			

의견  
대조  
필



###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묻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제13호  
다음과 같이 예고한다.

1990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 1. 자치법규제정 :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 2. 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취지 :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내용 : 별첨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sup>11</sup>법인 <sup>11</sup>단체 또는 개인은 1991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한다.

1990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자치법규제정 :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2. 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취지 :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내용 : 별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부과징수권자)** ① 법 제3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중개업을 허가한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허가관청이 부과 징수한다.

**제 3조 (청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4조 (과태료처분 통지등)** ① 허가관청이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납부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관청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 5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관청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한다

**제 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허가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발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 7조** (이의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허가관청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 8조** (과태료의 부과취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 한다.

**제 9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허가관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0조** (준용규정)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 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 중개업자	공인 중개사	비 중개업자
1.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2인이상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법 제6조 제 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0만원				
2.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 제 4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3. 사무소중개업전 또는 겸용업종 제한 의무에 위반한 경우 · 법령에서 규정 한 겸용업종에 이외의 업종에 겸용한 경우 · 사무소의 전용 의무에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 2항	..	40만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4. 허가관청의 관할 구역안에서의 사무소이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 2항	..	50만원	30만원	20만원		
5. 중개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연장승인없이 30일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 1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6.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 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 1항	..	50만원	40만원	20만원		
7. 품위유지와 신의 성실로서 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준수의무 불이행의 경우	법 제16조 제 1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인인 공인중 개업자	공인중 개사인 중개업 자	중개인 중 개업자	공인 중개 사	비 중개 업자
8.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관성권 때에 필 요한 사항을 따 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 약서를 작성 서 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 2항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50만원	30만원	30만원		
9.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의 허위 기재의 경우	법 제16조 제 3항	..	60만원	30만원	30만원		
10. 중개대상물의 물건 확인설명 불이행의 경우	법 제17조 제 1항	..	50만원	30만원	30만원		
11.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불이행의 경우	법 제17조 제 2항	..	50만원	30만원	20만원		
12. 휴업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	법 제18조	..	40만원	20만원	10만원		
13. 중개완성시 업무보증서 사본 교부의무위반의 경우	법 제19조 제 4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14. 공인중개사자격 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 3항	..				30만원	
15. 업무실적보고 의무위반의 경우	법 제25조	..	40만원	30만원	20만원		
16. 사무소내 허가증 중개수수료 요율 표, 공인중개사자 격증, 기타 내무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	40만원	30만원	20만원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 개업자	중개인 중개업자	공인 중개사	비 중개업자
17. 사무소에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장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40만원	30만원		
18. 사무소의 명칭 및 광고규제 의무 위반의 경우							
.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의 경우	법 제28조 1항	..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전단, 명함, 신문, 기타 간행물, 이용광고시	법 제28조 2항		40만원	20만원	20만원		
. 중개업의 허가번호, 중개업자 사무소의 명칭 의무 위반의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중개업자 표시 또는 유사한 용어 사용 금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법 제28조 제 3항	..					40만원
.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전단, 명함, 신문, 기타 간행물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 기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중개업자의 광고금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법 제28조 제 4항	..					40만원
19. 중개업자 등의 교육이수의 의무 위반							
. 년 1회 이상 일반교육, 3년마다 1회 연수 교육의 의무 위반의 경우	법 제29조 제 2항	..		20만원	20만원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부 과 기 준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 개사업자	중개인 중개업자	공인 중개사	비 중개자
.중개업자의 교육의무,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위반의 경우 .중개업자의 3년 이상의 휴업 공인중개사가 3년이상 중개업 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중개업개시전 미리 연수교육 을 받지 아니한 경우 .중개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중개 보조원을 고용 한 경우	법 제29조 제 3항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30만원	20만원	10만원		
	법 제29조 제 4항	..		20만원	10만원		
	법 제29조 제 5항	..	30만원	20만원	10만원		